

## ○ 기본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합11913	사건명	[전자]손해배상(기)
원고	손OO 외 9998명	피고	에000000000000
재판부	제22민사부(나)(전화:02-530-1745(동관11층 합의1과))		
접수일	2025.07.03	종국결과	

## ○ 진행내용

진행구분 : 전체 ▼

-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달결과는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25.07.03	소장접수		
2025.07.04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2025.07.04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5.07.0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에게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25.07.0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25.07.07	원고 소송대리인 이OO 보정서 제출		
2025.07.30	피고 에000000000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25.09.02	피고 에000000000000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제출		
2025.09.0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에게 답변서부본(25.09.02.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의(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